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4
------------	------

2023년 12월 1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회계 업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조례 적용 대상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기관 확대(안 제2조제1호):‘유치원을 제외한’문구 삭제

나. 업무추진비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상위 규정 명칭 변경(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다. 기존 규정 상세화 및 명칭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수정(안 제7조제1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4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회계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법령체계에 따른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한 것으로 개정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 중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을 ‘각급 학교의 장’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먼저 업무추진비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1]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업무추진비 대상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생략

[표-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대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본청 소속)의 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소속),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운영, 교육여건개선, 방과후과정운영 등의 다양한 세부사업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시 유치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안 제2조제2호에서 ‘유치원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업무추진비 현황¹⁾

(단위: 원)

예산소관부서명	세부사업	예산액
유아교육과	교원연수운영	120,000
	교원인사관리	4,360,000
	교육과정운영지원	300,000
	누리과정지원	1,440,000
	사립유치원지원	4,100,000
	유아교육운영	14,620,000
	유치원교육여건개선	1,400,00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800,000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운영	3,560,000

○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례 제정(2018.3.19.)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11.2.)」의 업무추진비 분류²⁾를 반영한 것으로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로 분류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을”을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로, “수령자”를 “수령자, 사용용도”로 변경하여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경우, 집행 품의서에”는 “경우에는”으로, “기재하여”는 “증빙서류에 기재하여”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제시된 사항을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물품’은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으로 변경하면서 ‘물품명’은 변경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업무추진비 구매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는 ‘물품수불부’에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사항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상위 법령의 반영 범위를 통일되게 적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 변경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60페이지
--	---	-----------------------------------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1.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 ----- 수령자, 사용용도 ----- -----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 ----- - 경우에는 -----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 ----- ----- -----	■ 업무추진비 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 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한편 안 제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기관’을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이 나이스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자료가 교육청 정보공개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자동 업로드되고,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자료들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공개되고 있으므로 ‘기관’ 홈페이지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³⁾, 동 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규정하는 것이 규정의 복잡성 완화 및 시민의 이해도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VII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1호 중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 “지급관리대장에”로 수정하고자 함.

IX. 심사결과 : 수정가결.

X. 부대의견 : 없음.

X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업무추진비 공통기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54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물품명’ 및 ‘물품수불부’가 동 집행기준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기에 이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호 중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 “지급관리대장에”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 “지급관리대장에”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집행기준) ①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1.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 -----물품명----- - 수령자, 사용용도 -----물품수불부를-----	1. -----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지급관리대장에-----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 -----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 -----	2.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을”을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로, “수령자”를 “수령자, 사용용도”로,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을 “지급관리대장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경우, 집행 품의서에”를 “경우에는”으로, “기재하여”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업무추진비 “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1.	-----	-----,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집행기준) ①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량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1.	-----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 수량자, 사용용도----- 지급관리 대장에 -----

현행	개정안

2. <u>접대성 경비</u> 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u>업무추진비</u> ----- 경우 에는 ----- ----- <u>증빙서류에 기재하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u>기관 홈페이지</u> 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 ----- ----- <u>기관 홈페이지</u> <u>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